

定 款

學校法人崇一學園

학 교 법 인 송 일 학 원 정 관

【 1947. 5. 31
문보 제147호 】

제 1 차 개정	1955. 12. 31	문보 제 3347호
제 2 차 개정	1960. 12. 30	문화 제 59호
제 3 차 개정	1964. 03. 31	전남교문 1040.31-879
제 4 차 개정	1964. 10. 31	전남교문 1040.32-3546
제 5 차 개정	1967. 12. 08	전남교문 1042.3-4324
제 6 차 개정	1972. 03. 02	문정 1032.3-1072
제 7 차 개정	1972. 12. 20	교행 1042.3-1280
제 8 차 개정	1973. 09. 28	교행 1042.3-968
제 9 차 개정	1973. 10. 25	관리 1042.3-2882
제 10 차 개정	1975. 06. 30	관리 1042.3-1008
제 11 차 개정	1975. 12. 28	관리 1042.3-1737
제 12 차 개정	1977. 07. 07	관리 1042.3-1031
제 13 차 개정	1981. 08. 17	관리 1042.3-972
제 14 차 개정	1984. 02. 20	관리 1042.3-254
제 15 차 개정	1986. 12. 10	관리 25422-49
제 16 차 개정	1990. 01. 25	관리 25422-85
제 17 차 개정	1990. 12. 29	관리 25422-828
제 18 차 개정	1992. 10. 28	행정 25422-682
제 19 차 개정	1993. 06. 25	행정 81422-582
제 20 차 개정	1993. 12. 24	행정 81422-1067
제 21 차 개정	1995. 03. 04	행정 81422-148
제 22 차 개정	1995. 05. 12	행정 81414-365
제 23 차 개정	1996. 07. 25	행정 81422-873
제 24 차 개정	1998. 03. 31	행정 81422-359

제 25 차 개정	1998. 04. 09	행정 81422-385
제 26 차 개정	1998. 06. 25	행정 81422-653
제 27 차 개정	2000. 03. 15	기예 81422-197
제 28 차 개정	2000. 08. 30	기예 81422-684
제 29차 개정	2001. 01. 29	기예 81422- 74
제 30차 개정	2001. 05. 04	기예 81422-337
제 31차 개정	2002. 04. 26	기예 81422-287
제 32차 개정	2003. 03. 17	기예 81422-214
제 33차 개정	2003. 03. 25	기예 81422-234
제 34차 개정	2005. 09. 28	기예 81422-5830
제 35차 개정	2007. 12. 20	교육행정 81422-9968
제 36차 개정	2008. 04. 08	교육행정지원과 -2862
제 37차 개정	2008. 10. 07	교육행정지원과 -7738
제 38차 개정	2009. 04. 21	교육행정지원과 -3929
제 39차 개정	2010. 02. 26	교육행정지원과 -1892
제 40차 개정	2013. 04. 22	제186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13. 05. 30	송일학원-146 정관변경보고
제 41차 개정	2014. 02. 17	제188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14. 03. 18	송일학원-115 정관변경보고
제 42차 개정	2015. 02. 09	제191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15. 03. 02	송일학원-94 정관변경보고
제 43차 개정	2016. 02. 19	제196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16. 03. 08	송일학원-127 정관변경보고
제 44차 개정	2016. 08. 19	제198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16. 09. 12	송일학원-318 정관변경보고
제 45차 개정	2019. 09. 30	제212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19. 10. 07	송일학원-286 정관변경보고
제 46차 개정	2020. 04. 20	제215회 학교법인송일학원 이사회 의결
	2020. 04. 27	송일학원-151 정관변경보고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기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송일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 광주송일고등학교
2. 광주송일중학교

제 4 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40(일곡동 46-24번지)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①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 보고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1 절 재 산

제 6 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④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삭 제)

제 12 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 12 조의 8(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3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1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 13 조 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6명으로 한다.

제 13 조 3(개방이사의 자격) ① 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으로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2.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② 법인이 필요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방이사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3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임원의 선·해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필요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 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3조의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교육감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 15 조의 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광주송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 또한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가. 광주송일중학교 운영위원회: 1인
 - 나. 광주송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2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과 같으며,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운영위원장은 법인의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2. 법인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선정되면 회의소집과 추천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여 추천을 요청한다.

3. 추천위원회 위원은 7일 이내에 법인 이사장이 정한 추천자의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추천위원회는 위원들이 추천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자를 선정한다. 단, 추천자가 법인 이사장이 요청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천자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 순서로 선정한다.

5. 법인에 추천대상자 통보

○ 추천위원회 의장은 법인에 추천대상자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천공문 1부
2. 추천대상자 인적사항(이력서) 1부
3. 추천위원회 회의록 1부
4. 대한예수교장로회 본 교단 세례교인증명서 1부

제 16 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2(개방이사 추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 17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 18 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19 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위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 조 (삭 제)

제 21 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3 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의 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 26조의 1(사학윤리강령 준수)등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26조의 2(임원 및 교직원행동강령) ①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한다.

② 학교법인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개방 감사로 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 27 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재산 임대수입

2. 예금이자 수입

제 28 조(수익사업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부를 경영한다.

제 29 조(수익사업의 주소) 사업부의 주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40(일곡동 46-24) 학교법인 송일학원내에 둔다.

제 30 조(관리인) ① 수익사업을 경영하기위해 관리인을 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31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33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4 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교감의 임기는 학교장에 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⑥ ~ ⑦ 삭제

제 34 조의 2(기간제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의 3 (삭 제)

제 34 조의 4(전형결과와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다.

제 34조의 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4조 제4항에 따른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2를 준용한다.

제 34조의 6(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 (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 검찰 .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 35 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동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 36 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 2. 제35조 제1항 제7호의 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5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3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소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38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5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 제)

제 39 조(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해제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를 따른다.

① ~ ⑧ (삭 제)

제 40 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등을 준용한다.

제 40 조의 2(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

제 41 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1 조의 2(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승진) 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재직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41 조의 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1 조의 4(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1 조의 5(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신규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1 조의 6(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41 조의 7(인사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조의 8(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1/3이상이 요청할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1 조의 9(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 41 조의 10(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41 조의 11(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 42 조(삭제)

제 43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2에서“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43 조의 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7조의 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44 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5 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6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46 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46 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47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47 조의 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48 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9 조(삭제)

제 49 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0 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51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제 52 조 내지 제 65 조(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 66 조(자격) ①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7 (삭제)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67 조(임용) ①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신규임용의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타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한다.

④ ~ ⑤ (삭 제)

제 67 조의 2 (삭 제)

제 67 조의 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7 조의 4 (삭 제)

제 68 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69 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9 조의 2 (삭 제)

제 70 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3을 따른다.

③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제 71 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72 조(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실)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제 73 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74 조(하부조직)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 3 절 중 학교

제 75 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76 조(하부조직)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6급으로 보한다.

제 77 조 내지 제 81 조 (삭 제)

제 4 절 정 원

제 82 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83 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광주송일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84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중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3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을 따른다.

제 85 조(위원의 선출 등) 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86 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② (삭 제)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87 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88 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9 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 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90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1 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92 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의소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따른다.

③ ~ ④ (삭 제)

제 93 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 94 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5 조 내지 제 96 조 (삭 제)

제 97 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8 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99 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 규정 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 100 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 101 조(지원·지도등) 법인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1조의 1(시정명령신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사유발생시 시정을 명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제 102 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 103 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광주송일중·고등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14조 (삭 제)

제 10 장 보 칙

제 115 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 116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17 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 사	정순모			
이 사	김창국			
이 사	성갑식			
이 사	주형옥			
이 사	서한권			
이 사	이남규			
이 사	조승제			
이 사	박석현			
이 사	배영석			
이 사	김아곡			
이 사	조하파			

부 칙〔문보 제147호 (47.5.31.)〕

이 정관은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보 제3347호 (55.12.31.)〕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 제59호 (60.12.30.)〕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남교문 1040.31-879 (64.3.31.)〕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남교문 1040.32-3546 (64.10.31.)〕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남교문 1042.3-4324 (67.12.8.)〕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정 1042.3-1072 (72.3.2.)〕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행 1042.3-1280 (72.12.20.)〕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행 1042.3-968 (73.9.28.)〕

이 정관은 197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2882 (73.10.25.)〕

이 정관은 197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1008 (75.6.30.)〕

이 정관은 197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3-1737 (75.12.28.)〕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1042.3-1031 (77. 7. 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별표1 및 별표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사무직원중 제37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후 6월 이내 당연 퇴직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사무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을 하지 않는다.

부 칙 [관리 1042.3-972 (81. 8. 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근무하는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④(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종전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허용하지 못한다.

⑤(현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이사, 감사 포함)은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관리 10423-254 (84.2.20.)]

이 정관은 198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리 25422-49 (86.12.10.)]

①이 정관은 198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관리 25422-828 (90.12.29.)]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행정 25422-682 (92.10.28.)]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 8122-582 (93.06.25.)〕
이 정관은 199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 81422-1067 (93.12.24.)〕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 81422-148 (95.3.4.)〕
이 정관은 199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81414-365 (95.5.12.)〕
이 정관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행정81422-873 (96.7.25.)〕
①이 정관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하며,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은 차하급의 정원으로 본다.

부 칙〔행정81422-359 (98.3.31.)〕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81422-653 (98.6.25.)〕
이 정관은 1998년 월 일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기예81422-197 (2000.3.15.)〕
이 정관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예81422-684 (2000.8.30.)〕
이 정관은 200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 [기예81422-74 (2001.1.29.)]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22-337 (2001.5.4.)]

이 정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22-287 (2002.4.26.)]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예81422-214 (2003.3.17.)]

이 정관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22-234 (2003.3.25.)]

이 정관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22-5830 (2005.9.28.)]

이 정관은 200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81422-9968 (2007.12.20.)]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2862 (2008.04.08.)]

이 정관은 2008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7738 (2008.10.07.)]

이 정관은 2008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3929 (2009.04.21.)]

이 정관은 2009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1892 (2010.02.26.)]

이 정관은 2010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13.04.22.)]
이 정관은 2013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8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14.02.17.)]
이 정관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1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15.02.09.)]
이 정관은 2015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6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16.02.19.)]
이 정관은 2016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8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16.08.19.)]
이 정관은 2016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19.09.30.)]
이 정관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회 학교법인 송일학원 이사회의결 (2020.04.20.)]
이 정관은 2020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구분	일 반 직							기 능 직				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10급	계	
정원		1	1				2					

[별표 2]

광주송일중학교 사무직원 정원										
구분	일 반 직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급	9급	계	
정원		1		1		2		2	2	4

광주송일고등학교 사무직원 정원									
구분	일 반 직					일반직 (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합계
	5급	6급.7급	8급	9급	계	8급	9급	계	
정원	1	1	1		3		3	3	6

기 본 재 산 목 록

1. 교육용 기본재산

가. 토 지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학교용지	54,925	3,221,100,00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1-3	임야	12,956	759,817,576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1-4	임야	170	9,969,82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1-5	임야	660	38,706,36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1-9	임야	1,112	65,214,352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1-10	임야	544	31,903,424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1-11	임야	3,741	219,394,686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3-5	임야	236	13,832,572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산73-6	임야	100	5,864,600	
합 계			74,444	4,365,803,390	

나. 건 물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지적(m ²)	평가액(원)	비고
* 중학교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1층	740.91	386,978,84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2층	937.38	489,330,36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3층	1,161.66	606,169,56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4층	1,258.00	657,068,77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5층	1,171.07	582,940,29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지하1층	406.48	212,756,730	
* 고등학교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1층	622.80	325,449,15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2층	882.66	437,144,55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3층	1,086.55	567,040,83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4층	1,111.24	580,613,80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5층	1,293.04	683,688,99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옥탑층	74.48	39,800,53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1층	120.68	95,440,80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2층	129.92	102,744,60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층3층	129.92	102,744,600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지적(㎡)	평가(원)	비고
* 특별교실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1층	436.30	228,291,53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2층	524.60	274,291,62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3층	594.66	323,308,64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일반철골구조	575.03	344,574,330	
* 도서관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1층	139.08	73,454,05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2층	651.70	340,504,67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조립식판넬 지붕 3층	470.93	107,511,95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지하 1층	104.22	55,293,650	
* 기숙사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1층	241.19	126,648,50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및 조립식 판넬지붕	609.51	252,935,69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3층	488.66	255,568,590	
* 기계실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시멘트벽돌 스라브1층	4.20	956,420	
* 강당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1층	1,290.22	673,143,33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2층	534.92	279,667,85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지하 1층	592.71	309,773,360	
* 수위실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1층	16.56	9,626,970	
* 고용원숙소동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동	46-24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층1층	97.40	51,740,760	
합 계			18,498.68	9,557,204,310	

2. 수익용 기본재산

가.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	100-1	전	2,833	30,029,800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	130-6	전	668	7,080,800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	130-7	전	539	5,713,400	
광주광역시북구충효동	산22-1	임야	255,372	168,545,520	
합계			259,412	211,369,520	

나. 현 금

예금종별	예금은행명	금액(원)	예치기간	계좌번호	이율
광주은행채권 (후순위특약부채권)	광주은행 (일곡지점)	476,000,000	자 2004. 7.23 지 2010. 1.23	153-772-000199	6%
광주은행채권 (후순위특약부채권)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158,000,000	자 2008.11.21 지 2014.05.21	153-772-000250	8%
광주은행채권 (후순위특약부채권)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117,000,000	자 2005.11.24 지 2011.05.24	153-772-000205	6%
광주은행채권 (후순위특약부채권)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227,000,000	자 2008.11.21 지 2014.05.21	153-772-000269	8%
광주은행채권 (후순위특약부채권)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21,000,000	자 2008.11.21 지 2014.05.21	153-772-000241	8%
광주은행 (정기예금)	광주은행 일곡동지점	1,293,574	자 2008.05.21 지 2009.11.23	153-130-145175	5.2%
합계		1,000,293,574			